##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18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백혜련・이병진・박홍배

이기헌 • 이재강 • 민홍철

김준혁 · 서미화 · 이용우

서영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 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 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완전히 자동화된"을 "자동화된"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완전히 자동화된"을 "자동화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			
런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완전히 자동화된</u> 개인정보	6. <u>자동화된</u>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			
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			
할 권리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주체는 <u>완전히 자동화된</u> 시스	<u>자동화된</u>		
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			
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			
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			
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			
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